

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10년 4월 6일

○ 회부일자 : 2010년 4월 7일

3. 제안이유

○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·군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·운영하도록 관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정위원회 구성·운영 및 비용부담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.

○ 법제처 법률용어 정비원칙에 따른 용어 순화

4. 주요골자

○ 토지 등 소유자의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(안 제5조의2)

○ 안전진단의 비용 (안 제10조의2)

○ 도시분쟁조정위원회 (안 제25 ~ 제29조)

5. 검토의견

○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

○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정비구역이 지정된 시·군에 “도시분쟁조정위원회”를 두도록 「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」이 2009년 5월 27일 개정·시행됨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 알기쉬운 법률용어로 순화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

○ 조정위원회의 구성, 운영, 비용부담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 알기쉬운 법률용어로 순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